

# 附 錄

# 目

# 次


1. 平昌郡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중改正條例案 — 171
2. 平昌郡農村指導者實費辯償條例중改正條例案 — 175
3. 平昌郡궤형自動車에 대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  
條例案 ————— 179
4. 平昌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 183
5. 平昌郡里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중改正條例案 — 191
6. 平昌郡褒賞條例중改正條例案 ————— 194
7. 平昌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 197
8. 平昌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違反者에  
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 220
9. 平昌郡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중改正條例案 — 234
10. 農漁村發展計劃 ————— 241

#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년월일 : 1994. 2.

제출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초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개정일 '91.5.31)

## 2> 주요골자

- 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10일전까지 알려져 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회에 임하기 위함임.
- 나.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부의 사항을 종전 7일 이전에서 10일 이전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7일전까지"를 "10일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6조(회의) ①(생략)</p> <p>②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u>7일전</u>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6조 ①(현행과 같음)</p> <p>②----- <u>10일전</u></p> <p>-----</p> <p>-----</p> <p>-----</p>

## 관련법령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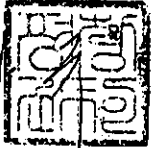
초 지 법	초 지 법 시 행 령
<p>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또는 자치구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1.5.31)</p> <p>②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또는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1.5.31)</p>	<p>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u>10일전까지</u>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 평창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년월일 : 1994.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 안 이 유

- 상위법인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자치법규인 본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 현행조례의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6호에」 규정은 국내 여비규정 개정으로 제6호는 없으므로 개정 국내여비규정에 맞도록 "제6호"를 "제4호"로 개정함.(조례안 제3조)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여비정액표의 제6호"를 "여비정액표의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생략)</p> <p>제2조(생략)</p> <p>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판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 <u>여비정액표의 제6호에</u>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p> <p>제4조(생략)</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현행과 같음)</p> <p>제3조(실비변상) _____            _____            _____ <u>여비정액표의 제4호에</u> _____</p> <p>제4조(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공무원법

- 제46조(實費辦償등)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②(생략)

## ■ 국내여비규정

- 제15조(지급) ①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 및 식탁료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93.5.20>

여비정액표 (제15조제1항 관련)

등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부호	1등급	1등급정액	정액	정액	6,500	17,000 15,000	11,000 9,500	2,000
제1호	1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6,500	17,000 15,000	11,000 9,500	800
제2호	1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6,500	17,000 15,000	11,000 9,500	800
제3호	2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6,500	14,000 11,500	10,500 9,000	800
제4호	3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6,500	11,500 9,500	10,000 8,500	800

비고 : 1.(생략)

- 2.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4.(생략)

# 평창군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년월일 : 1994.

제 출 자 : 평 창 군



## 1. 제안이유

- 짚형자동차는 그 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도록 조정되었음.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8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을 위축시키고 조세반발이 예상되어 일정기간 동안은 일반승용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 주요골자

-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안제2조)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씨 이하	10 원	110 원
2,000씨씨 이하	10 원	140 원
3,000씨씨 이하	12 원	165 원
3,000씨씨 초과	15 원	200 원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내지6호(생략)

## □ 지방세법시행령제 146조의 4제 1항

○ 법제 196조의 5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일반형·승용검화물형 및 기타형 자동차

[ \* '94. 4. 1부터 승용자동차로 통일 : 대통령령제 14041호 ('93. 12. 31) ]

### 2. (삭제)

### 3. 기타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질형 자동차

[ \* '94. 4. 1부터 삭제 : 대통령령제 14041호 ('93. 12. 31) ]

4내지7호(생략)

## □ 자동차관리법 제 3조

자동차는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平昌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의안 번호	161
----------	-----

제출년월일 : 1994. 3 .

제 출 자 : 명 창



## □ 提案理由

-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군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 主要骨字

### 가.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
-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 지역주제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 나.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학계, 예·체육인등  
민·관·산·학 대표자 위촉

## 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 회의 : 정기회 —— 매분기 1회소집, 필요시 임시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운영
-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
-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

## 라.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 협의회위원과 공청회·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 조례규정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함.

## 平昌郡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평창군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평창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평창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제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회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회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회 협의회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4,166호, '94. 2. 16)

- 판보 사본 붙임 참조

▷ 강원도 기획 13104 - 0118호 ('94. 2. 23)

- 붙임 참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1994년 2 월 16 일

국무총리 이 회 참

국무위원 황 영 하  
총무처장관

○대통령령 제14,166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제 1 조 ( 목적 )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의 정립 및 종합적 추진방안의 수립과 국민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방안등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건의한다.

1. 국제화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의 정립과 종합적 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화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추진이 미흡한 분야의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와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무총리가 국제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 (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 4 조 ( 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 회의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 분과위원회 )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조 ( 전문위원 )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정책개발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비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 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의 등을 통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 간사 ) ①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조정실 국제화추진업무담당 심의관이 된다.

제 10 조 ( 관계기관등의 협조요청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 공무원 파견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연구활동 및 행정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 여론의 수집 ) 위원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 13 조 ( 수당등 )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공청회·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 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말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國際化推進委員會規程 制定理由

國政全般에 걸쳐 균형있고 綜合的인 國際化推進의 방  
향과 國民의 國際化에 대한 認識提高方案등에 관하  
여 研究·審議하여 國務總理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  
여 國務總理所屬하에 限時的으로 國際化推進委員會를  
設置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國際化推進委員會는 國際化推進의 基本方向과 綜合  
的인 推進方案의 수립, 分野別 國際化推進狀況에  
대한 評價 및 國民의 國際化에 대한 認識提高方  
案등에 관하여 研究·審議하고, 그 결과를 國務總  
理에게 建議하도록 함(令 第2條).

나.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6人 이내의 委  
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 및 委員은 國務總理가 위  
촉하도록 함(令 第3條).

다. 委員會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  
科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6  
條).

라. 委員會의 研究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專門知識을  
갖춘 專門家를 非常勤인 專門委員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

마. 委員會는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資料提出등의 요청과 關係行政機關 所屬公  
務員의 派遣要請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  
및 第11條).

바. 이 規程은 1996年 2月 末日까지 효력을 가지도  
록 함(令 附則).

<법제처 제공>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년 월 일 : '94.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이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 이농현상에 의한 농촌의 노령화, UR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침체등으로 이장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장임기가 점차 단기화(1~2년) 되어 현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자격요건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음
- 따라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현재 이장으로 2년이상 근무(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이장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책임감있게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장학금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현재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이장으로 2년이상 근무(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 개정(안 제2조)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현재 이장으로 2년이상 근무(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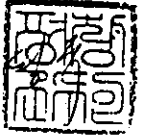
현행	개정
<p>제7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u>자의 자녀</u>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생략) 2. (생략)</p>	<p>제2조 (장학생의 자격) -----  <u>현재 이장으로 2년이상 근무(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u> -----</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
----------	-----

제출년 월 일 : '94. 1.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난 '91년 제1회 군민대상 수상 이래 3회에 걸쳐 문화체육 부문을 수상해온 바 매년 많은 후보자가 난립되어 문화부문 과 체육부문을 안배하여 수상자를 결정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음.
- 따라서, 군민대상 문화체육부문을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 시상함으로써 부문간의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전인적인 군민의식을 확산 군민화합을 이루는 초석을 다지기 위함.

## 2. 주요골자

- 제7조의2(군민대상) 제2항제2호 문화체육부문을 문화부문, 체육부문으로 분리함으로써 군민대상 수상부문을 4개부문에서 5개부문으로 확대



##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2호 "문화체육부문"을 제2호"문화부문"과 제3호 "체육부문"으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7조의2(군민대상) ①(생략)</p> <p>②수상은 <u>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역개발부문</u></li> <li>2. <u>문화체육부문</u></li> <li>3. <u>향토봉사부문</u></li> <li>4. <u>효행부문</u></li> </ol> <p>③(생략)</p>	<p>제7조의2(군민대상) ①(현행과 같음)</p> <p>②-----<u>각호의 1의</u>-----</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u>문화부문</u></li> <li>3. <u>체육부문</u></li> <li>4. <u>향토봉사부문</u></li> <li>5. <u>효행부문</u></li> </ol> <p>③(현행과 같음)</p>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5
----------	-----

제출년월일 : 1994.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업무 수행

## 2. 주요골자

### 가. 일반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6조)

- 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에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인구, 주거형태, 폐기물발생 및 발생예상량, 처리계획, 처리시설 설치계획등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군수는 가구수가 50호 미만인지역, 산간·오지등 차량 출입이 어려워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국립공원, 관광지등은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한하여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라.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군수는 공동주택,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방법과 작업여건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군수가 승인할 수 있음.

#### 마.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일반폐기물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재활용쓰레기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를 분리보관 하여야 함.
-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종이, 캔, 병, 플라스틱 고철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함

#### 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군수는 휴게소 영업자, 여객터미널업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상시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등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이급 보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은 내수성 재료로, 수집·운반이 쉬우며, 뚜껑이외의 부분은 밀폐되도록 만들고, 보관시설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군수는 보관시설이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의 사유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음.

#### 사.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허 가
  -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 장비, 기다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은 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됨.
- 지도감독
  - 군수는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주민편의, 공중위생을 위하여 허가요건,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실태 및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에 대하여 년1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함.

## 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본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하며, 과태료처분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 과태료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하며, 과태료 납입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 까지로 하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제기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며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함.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등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라 함은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와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라 함은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처리"라 함은 일반폐기물의 소각·파쇄·매립 등에 의한 중간, 최종처리를 말한다.
- ④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파쇄·매립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⑤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수립하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①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 장 일반폐기물의 처리

제6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규정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300Kg 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동일 건물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내에서 신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집방법과 작업여건 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지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일반폐기물 처리는 동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속성을 감안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 있는 일반폐기  
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일반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소각·매립 등 생활환경  
보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③제1항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금속·플라스틱 등 내수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 다.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재활용 일반폐기물, 가연성 일반폐기물 및 불연성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④군수는 설치된 보관시설·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이전할 경우는 사전에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3 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제11조(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2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 제 4 장 보 칙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 장비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외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 5 장 벌 칙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과태료는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18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등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제24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 제 6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과 대 료 부 과 기 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후)
1.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일 반 폐기물을 투기한 자(법 제7조)			
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 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매회마다 25	-	-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 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다량 배출자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일 반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	500	700	1,000
2.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 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 출자의 경우	300	600	1,000
나.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 출자의 경우	10	30	50
3. 일반폐기물을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 출자의 경우	300	600	1,000
나.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배출자의 경우	20	5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4.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법 제17조제4항)	400	700	1,000
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20조제3항)	1,000	-	-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300	500	1,000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 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1,000	-	-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여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 호

받 음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 제 조 제 항의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 조의 규정에  
년 월 일 까지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 별지 제3호 서식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①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의 무 자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 일 자	
<p style="text-align: center;">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margin-top: 20px;">                     평           창           군           수                 </p>			





제 호			
발 음	보 념 평 창 군 수 (인)		
<p>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p> <p style="margin-left: 40px;">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p> <p style="margin-left: 40px;">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p>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1부.</p> <p style="margin-left: 40px;">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p>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 밀지 제7호시식 ]

과 테 료 수 남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 번호	③ 과테 료처 분일	④ 족장 발부 일	남 부 기 한		⑦ 금액	남 부 의 무 자		⑧ 과테 료 남부 일	이 의 제 기	
				⑤ 당초	⑥ 독축		⑧ 성명	⑨ 주 소		⑩ 이의 제기 일	⑪ 입원 동보 일

297mm X 210mm  
(신란용지 54g/㎡)

# 관계 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②다량배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다량배출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할 수 있다.

### 제17조(일반폐기물처리업)

①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2.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파쇄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 3.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45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일반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 특정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특정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②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3조(과태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제6조(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내 1톤이상 배출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제6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제12조(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은 별표 7과 같다.



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2.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3. 기술능력확보계획서

㉕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이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㉖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일반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6.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㉗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㉘ 시·도지사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평창군자원의결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166
----------	-----

제출년월일 : 1994.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92. 12. 8 제정된 자원의결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과태료의부과징수)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함.

## 주요골자

### 가.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과태료는 최저 3십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으로 하고 수납된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함.

### 나.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5조)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각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전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며, 영업권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시에 승계됨.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중 예치금 부과대상 제조·수입업자,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환경청장 협조하에 위반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여야 함.
-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30일이며, 동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 다. 청문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7조, 제8조)

-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청문일 7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과태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제기가 있을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의하여 강제징수하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국고에 귀속함.

##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0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과태료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 과태료부과 처분횟수 및 양도·상속시 행정처분 적용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권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청문) ①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처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2회이상 청문 통지서가 발송되어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처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정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의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피처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㉔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예치금 부과대상 제조·수입업자,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거나, 관할 지방환경청장 협조하여 위반사항을 직접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 또는 부당한 취소 및 변경)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피처분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과태료수납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p>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제2항)</p> <p>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나. 제1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다. 제2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라.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2,000</p> <p>2,000</p> <p>1,500</p> <p>1,500</p>	<p>2,500</p> <p>2,500</p> <p>2,000</p> <p>2,000</p>	<p>3,000</p> <p>3,000</p> <p>3,000</p> <p>3,000</p>
<p>2.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p> <p>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 style="margin-left: 20px;">(1)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p> <p style="margin-left: 20px;">(2)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과한 때</p> <p style="margin-left: 20px;">(3)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때</p> <p>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 style="margin-left: 20px;">(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p>	<p>1,500</p> <p>2,000</p> <p>2,500</p> <p>2,500</p> <p>1,000</p>	<p>2,000</p> <p>2,500</p> <p>3,000</p> <p>3,000</p> <p>1,500</p>	<p>3,000</p> <p>3,000</p> <p>3,000</p> <p>3,000</p> <p>3,000</p>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2)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1,500	2,000	3,000
(3)기준보다 3회이상 더 포장한 때	2,000	2,500	3,0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접합 (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 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마.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 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 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 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000	2,500	3,0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용적 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 충재 감량화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사. 제조자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2,000	2,500	3,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000	2, 000	3, 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500	2, 500	3, 0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 000	2, 000	3, 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1, 500	2, 500	3, 0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 엄업	1,500	2,500	3,000
(2)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 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 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함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 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0	2,500	3,000
4.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등 일반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제2항)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5. 장부틀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제3항)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정사업자	300	500	1,0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부산물 배출사업자	300	500	1,000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치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00	500	1,000
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00	500	1,000

계 호  
반 음  
계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의결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원의결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 별지 제2호 서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납부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자원의결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평      창      군      수      귀      하</p>				

[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용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자원의결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관	임시적 세외 수입	항	잡 수 입	과 태 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군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평창군수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 자원의결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관	임시적 세외 수입	항	잡 수 입	과 태 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군 통보용)

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 자원의결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관	임시적 세외 수입	항	잡 수 입	과 태 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개인용지용)

제 호 영수증				
위반사항 : 자원의결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관	임시적 세외 수입	항	잡 수 입	과 태 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 별지 제4호 서식 ]

재 호					과 태 료 납 부 득 축 장					
납 부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 일자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 별지 제5호서식 ]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 기 한		⑦ 금액	납부 의무자		⑧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소		⑩ 이의제기일	⑪ 법원통보일

297mm × 210mm  
(신문용지 54g/m<sup>2</sup>)

# 관계 법령 발췌서

## ■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 第13條(資源再活用 권고 및 措置命令)

②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事業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名單과 指針違反內容을 公開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第15條(包裝廢棄物등의 發生抑制를 위한 권고 및 措置命令)

②主務部長官은 製造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阻害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⑤市長·郡守·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事業者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當해 地域의 資源再活用促進을 현저히 阻害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第16條(一般廢棄物排出者의 再活用の 이행등)

②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廢棄物排出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阻害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當해 排出者에 대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第34條(보고 및 檢査등)

③第1號 내지 第4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記錄· 보존하여야 한다.

### 第40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3.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 第41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장부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60 호
------	---------

제출년월일 : 1994.

제 출 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묘지,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 시달로 본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제정근거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074호, '93. 12. 31)에서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별표3]과 같이 함.



##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금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130,000 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100,000 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시설 근무자	70,000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p> <p><u>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 별표3 ] 과 같다.</u></p> <p>[ 별표3 ]</p> <p style="text-align: center;"><u>장려수당지급구분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80%; text-align: center;">지 급 대 상</th>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지 급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① <u>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130.000 원</u></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② <u>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100.000원</u></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③ <u>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10.000원</u></td> </tr> </tbody> </table>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u>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	<u>130.000 원</u>	② <u>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	<u>100.000원</u>	③ <u>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	<u>10.000원</u>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u>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	<u>130.000 원</u>								
② <u>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	<u>100.000원</u>								
③ <u>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u>	<u>10.000원</u>								

# 관 계 법 령 발 취

##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2. 근 거 :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준칙 ( '94. 1. 13)

#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4년 3월 일

의안 번호	160
----------	-----

제안자 : 김대원의원 의  
5인

## □ 수정이유

1. 평창군묘지,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협오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인근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자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수정주요골자

1. 동조례안 "제3조중" 별표3의 장려수당지급 구분표를 "제1항 130,000원을 180,000원"으로 "제2항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제3항 70,000원을 120,000원"으로 수정

##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중" 별표3의 장려수당지급 구분표를 "제1항 130,000원을 180,000원"으로  
"제2항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제3항 70,000원을 120,000원"으로 수정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 장려수당지급구분표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p>① 시체화장업무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u>130,000원</u></p> <p>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근무자. <u>100,000원</u></p> <p>③ 하수 폐수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시설 근무자 <u>70,000원</u></p>	<p>① 원안과 같음. <u>180,000원</u></p> <p>② 원안과 같음. <u>150,000원</u></p> <p>③ 원안과 같음. <u>120,000원</u></p>

# 農漁村發展計劃

(要 約)

平 昌 郡

## I. 農漁村發展計劃樹立基本方向

### 1. 目的

- 農水産業의 競爭力을 強化하고 農漁村所得源 擴充과 生活環境을 改善하기 爲하여 農漁村構造改善 對策의 投資財源(42兆원)을 地域特性에 맞는 投資를 함으로써 效率性을 極大化하여 均衡發展을 圖謀하는데 있음

### 2. 農漁村發展計劃 調定 背景

- 農漁村構造改善 投資財源 42兆원의 投資計劃이 「新農政」推進과 함께 10個年('92 ~ 2001年)에서 5個年('94 ~ '98)으로 投融資 期間이 短縮됨에 따라 '92年度에 樹立된 平昌郡農漁村發展 10個年 計劃을 修正하게 되었으며
- 既樹立된 計劃은 農漁民의 意見이 反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全國 劃一的인 事業計劃 樹立으로 地域 特性이 反映되지 않아 修正하게 되었음.



### 3. 農漁村發展計劃 樹立 日程

- 1992. 2. 25 - 農漁村發展計劃 指針示達 (農林水産部 → 道)
- 1992. 4. 9 - 指針 示達教育 (江原道 → 郡)
- 1992. 4. 16 - 農政企劃團 構成 (副郡守外 13名)
- '92. 5. 11 ~ 8. 30 - 資料收集 及 計劃 檢討
- '92. 9. 1 ~ 11. 21 - 計劃 樹立
- 1992. 12. 15 - 平昌郡農漁村發展審議會 審議
- 1992. 12. 21 - 平昌郡議會 報告
- 1992. 12. 22 - 計劃(案) 提出 (平昌郡 → 江原道)
- 1993. 11. 13 - 調定指針 示達 (江原道 → 市, 郡)
- 1993. 11 - 調定指針 傳達 教育 (邑面長 及 有關機關)
- '93. 12. 13~'94. 1. 8 - 計劃公告 (事業申請 要領等)
- '93. 12. 20 ~ 12. 24 - 說明會 開催 (邑面別 1回)
- '93. 12. 20~'94. 1. 8 - 事業申請 及 接受
- '94. 1. 9 ~ 2. 5 - 調定案 作成
- '94. 2. 5 ~ 12. - 農漁村發展審議會 分科委 審議
- 1994. 2. 17 - 農漁村發展審議會 審議
- '94. 2. 21 ~ 2. 26 - 計劃 調定 作業(江原道)

#### 4. 調定計劃이 10個年 計劃과의 다른점

##### ○ 事業推進 主體를 指定하여 推進

- 農漁民 自律事業 : 農漁家の 申請에 의거 計劃을 樹立하고 向後  
事業推進도 農漁家에서 直接 推進
- 地方 推進 事業 : 中央計劃에 따라 地方自治團體 또는 生産者團體  
에서 推進하는 事業으로 計劃 樹立과 事業 推進  
을 郡 혹은 生産者團體 (組合, 法人) 에서 推進
- 中央 推進 事業 : 政府에서 直接 計劃하고 推進하는 事業

##### ○ 事業物量 및 對象者 決定 : 農漁村發展審議會 分科 委員會에서 精密 分析하여 物量과 事業對象者를 1次決定 한 후 農漁村發展審議會 全體 會議에서 審議 議決

※ 既存 10個年 計劃은 農漁家 意思에 關係없이 事業量을 策定

##### ○ 事業費의 事前 配定 (國費 + 融資) (農林水産部 → 道 → 市, 郡)

- 事業費 配定 範圍 (總額) 內에서 地域實情에 맞게 調定
- 當該年度 事業費 申請은 計劃 事業費의 120% 要求 可能

## 5. 調定計劃 樹立時 事業費 反映

○ 事業量 策定과 事業費 策定은 道에서 配定된 事業費(國費 + 融資)만을 對象으로 審議하였으며 地方費(道費 + 郡費)와 自負擔은 「新農政」事業 說明書 및 地方財政法에 規定된 負擔 比率에 依거 投資計劃을 作成 하였음.

○ 農漁民 自律事業(☆표하나)은 農漁家の 申請에 依거 事業量과 事業費가 策定되고 投資計劃이 樹立되어야 하나 一部事業은 住民의 申請이 既存 投資物量보다 不足한 事業중 農業發展을 爲하여 지속적으로 投資되어야 할 事業은 道配定額 全體를 計劃에 反映

(例: 農漁民後繼者 育成, 專業農漁家 育成, 委託營農會社, 機械化營農團, 機械化專業農, 農機械供給, 土壤改良劑 供給, 葉煙草事業, 人蔘事業, 林業後繼者, 山林副產物 貯藏施設)

○ 地方推進事業(☆표두개)은 現在 細部的인 投資 計劃이 樹立되어 있지 않아도 向後 우리郡의 農業과 農林에 投資必要性이 있는 事業은 郡의 意志와 農漁村發展審議會 意見으로 投資計劃을 樹立 하였음.

(例: 農產物 共販場, 產地系列 加工事業, 農水產物 加工 機械事業等)

## 6. 우리郡 農漁村發展計劃(案)

### □ 總括表

(單位:百만원)

區分	財源	合計	1994年	1995年	1996年	1997年	1998年
合計	計	202,765	27,656	34,541	46,220	46,488	47,860
	國費	67,747	6,457	11,311	14,434	17,375	18,170
	道費	15,930	1,995	2,372	3,634	3,692	4,237
	郡費	38,701	5,616	6,277	8,319	9,168	9,321
	融資	46,775	9,848	8,135	11,211	8,661	8,920
	自負擔	33,612	3,740	6,446	8,622	7,592	7,212
I. 農業 農村支援 事業	計	139,354	21,563	23,222	32,193	28,588	33,818
	國費	47,570	5,174	8,262	9,743	11,024	13,367
	道費	10,430	1,574	1,399	2,327	2,132	2,998
	郡費	13,064	2,111	1,854	2,932	2,597	3,570
	融資	43,702	9,740	7,077	10,651	7,732	8,502
	自負擔	24,588	2,964	4,630	6,540	5,073	5,381
II. 林業 山林支援 事業	計	45,515	2,937	6,544	10,407	14,819	10,808
	國費	19,768	1,258	2,677	4,687	6,347	4,799
	道費	4,550	335	553	1,083	1,450	1,129
	郡費	11,111	756	1,320	2,429	3,757	2,849
	融資	2,664	78	694	555	924	413
III. 漁業 漁村支援 事業	計	164	100	16	16	16	16
	國費	41	25	4	4	4	4
	道費	20	12	2	2	2	2
	郡費	21	13	2	2	2	2
	融資	50	30	5	5	5	5
IV. 其他	計	895		895			
	國費	268		268			
	道費	134		134			
	郡費	134		134			
	融資	359		359			
V. 自律 事業	計	16,837	3,056	3,864	3,604	3,095	3,218
	國費	100	-	100	-	-	-
	道費	796	74	284	222	108	108
	郡費	14,371	2,736	2,967	2,956	2,812	2,900
	融資	-	-	-	-	-	-
	自負擔	1,570	246	513	426	175	210

# 事業別 細部計劃

## I. 農業, 農村支援事業

1. 定銳 農水產人力 支援 : 355名. 7,950百萬圓 (融資)

○ 農漁民後繼者 育成 —— 280名. 4,200百萬圓 (融資)

· '94 : 40名 · '95 ~ '98 : 每年 60名 選定

○ 專業農漁家 育成 —— 75名. 3,750百萬圓 (融資)

· '94 : 5名, · '95 : 8名, '96 : 10名, '97 : 18名, '98 : 34名

2. 農地綜合 整備 —— 5個事業. 37,752百萬圓

(國費:27,340. 道費:5,048. 郡費:5,364)

○ 一般耕地整理 : 1,126ha. 20,386百萬圓

(國費 16,013. 道費 2,039. 郡費 5,364)

· '94 : 119ha. '95 : 203ha. '96 : 202ha. '97 : 298ha. '98 : 304ha

○ 用水開發 (中規模) : 1個所. 630百萬圓 (國費)

· '94 : 1個所

○ 用水開發 (少規模) : 126ha. 815百萬圓

(國費 795. 郡費 20)

· '94 : 12ha. '95 : 12ha. '96 : 15ha. '97 : 42ha. '98 : 45ha

○ 農組水利施設 改補修 : 11個所. 874百萬圓

· '94 : 1個所 · '95 ~ '96 : 各 2個所 · '97 ~ '98 : 各 3個所

○ 畦其盤整備 : 343ha. 15,047百萬圓

(國費 : 9,028. 道費 : 3,009. 郡費 : 3,010)

· '94 : 40ha · '95 : 42ha · '96 : 92ha · '97 : 92ha · '98 : 114ha

3. 經營規模 擴大 —— 3個事業. 3,644百萬圓 (融資)

○ 農地賣買支援 : 80ha. 3,205百萬元(融資)

· '94 : 34ha · '95 : 14ha · '96 : 12ha · '97 : 11ha · '98 : 9ha

○ 農地貸借支援 : 35ha. 312百萬元(融資)

· '94 : 8ha · '95 : 12ha · '96 : 15ha

○ 農地交換,分合支援 : 15ha. 127百萬元(融資)

· '94 : 3ha · '95 : 2ha · '96 : 4ha · '97 : 6ha

4. 農業機械化事業 —— 5個事業. 16,586百萬元

(國費 2,723. 道費 841. 郡費 1,880. 融資 5,246. 自負擔 5,896)

○ 위탁영농회사 : 7개소, 667백만원

(國費 100. 郡費 100. 融資 399. 自負擔 68)

· '95 : 3個所 · '96 : 4個所

○ 機械化營農團 : 67個所. 1,959百萬元

(國費 490. 道費 204. 郡費 286. 融資 783. 自負擔 196)

· '94.'95.'97 : 各10個所 · '96 : 19個所 · '98 : 18個所

○ 機械化專業農 : 100戶. 2,238百萬元

(國費 338. 道費 100. 郡費 237. 融資 1,341. 自負擔 222)

· '94 : 60戶 · '95 ~ '98 : 每年 10戶

○ 一般農家支援(반값) : 3,168臺. 11,144百萬元

(國費 1,786. 道費 537. 郡費 1,248. 融資 2,163. 自負擔 5,410)

· '94 : 328臺 · '95 : 621臺 · '96 : 755臺 · '97 : 843臺 · '98 : 621臺

○ 農業機械化事後管理支援 : 2個事業. 578百萬元

(國費 : 9 融資 : 560)

· 訓練用機械 : 1臺('94), 18百萬元(國費 9, 郡費 9)

· 修理用部品,裝備購入 : 28個所, 560百萬元(融資)

('94 ~ '96 : 每年 8個所, '97 : 3個所, '98 : 1個所)

5. 品目別 施設 現代化 — 20個事業. 46,053百萬元

(國費 : 8,115. 道費 : 3,399. 郡費 3,612. 融資 16,456. 自負擔 14,471)

○ 施設채소 : 2個所. 6,707百萬元 ('96.'98 : 各1個所씩)

(國費 : 1,677. 道費 838. 郡費 838. 融資 2,014. 自負擔 1,340)

○ 高冷地채소 : 19個所. 7,885百萬元

(國費 1,973. 道費 984. 郡費 989. 融資 2,305. 自負擔 1,634)

·'94 ~ '97 : 每年 4個所      ·'98 : 3個所

○ 果生産流通支援 : 3個所. 8,591百萬元

(國費 2,108. 道費 1,073. 郡費 1,075. 融資 2,576. 自負擔 1,719)

·'94.'96.'98 : 各 1個所씩

○ 韓牛競爭力 提高事業 : 5,881百萬元

(國費 1,378. 道費 223. 郡費 223. 融資 2,833. 自負擔 1,224)

·'94:972百萬元    ·'95:968百萬元    ·'96:981百萬元    ·'97:1,105百萬元    ·'98:1,855百萬元

○ 鷓소 競爭力提高事業 : 2,573百萬元

(國費 443. 郡費 214. 道費 214. 融資 870. 自負擔 832)

·'94:1,129百萬元    ·'95:298百萬元    ·'96:298百萬元    ·'97:298百萬元    ·'98:550百萬元

○ 養豚競爭力 提高事業 : 45戶, 439百萬元

(國費 : 2. 融資 298. 自負擔 139)      ·'94 : 5戶    ·'95-'98 : 各10戶

○ 양계競爭力 提高事業 : 10戶, 189百萬元

(融資 : 134, 自負擔 55)      ·'94 ~ '98 : 各2戶

○ 가축계열화사업 : 1個事業. 1,250百萬元 (融資 875, 自負擔 375)

- '97 시행사업

○ 축산단지조성 : 1개소. 2,000百萬元 (1996년 시행)

(道費 : 50. 郡費 : 50. 融資 : 1,400. 自負擔 500)

- 조사료生産 基盤造成事業 : 1個所, 100百萬원 ('94施行)  
(國費 70, 道費 10, 郡費 10, 自負擔 10)
-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 1개소, 70백만원 ('94시행)  
(國費 21, 道費 7, 郡費 7, 融資 28, 自負擔 7)
- 其他 가축육성사업 : 1個所. 1,250百萬원 ('97施行)  
(融資 875, 自負擔 375)
- 客土事業 : 7,351ha. 6,967百萬원  
(融資 1,423. 自負擔 5,544)  
· '94 : 1,807ha · '95 : 1,827ha · '96 : 1,346ha · '97 : 1,192ha · '98 : 1,179ha
- 土壤改良劑 : 10,432톤. 556百萬원  
(國費 140, 郡費 136, 自負擔 280)  
· '94 : 2,432톤 · '95 - '98 : 每年 2,000톤
- 병충해방제 : 5,630ha. 140百萬원 (國費 70, 郡費 70)  
· '94 : 800ha · '95 : 1,130ha · '96 - '97 : 1,200ha · '98 : 1,300ha
- 豆類, 서류, 잡곡 競爭力提高 : 1個所, 276百萬원 ('95施行)  
(國費 193, 自負擔 83)
- 葉煙草 事業支援 : 40ha, 56百萬원 (融資 40, 自負擔 16)  
· '95 - '98 : 每年 10ha
- 버섯事業支援 : 6,360坪, 836百萬원 (融資 585, 自負擔 251)  
· '94 : 60坪 · '95 : 600坪 · '96 : 4,500坪 · '97-'98 : 每年 600坪
- 生藥事業支援 : 10ha, 247百萬원 (融資 160. 自負擔 87)  
· '94 : 1ha · '95 : 2ha · '97 : 5ha · '98 : 2ha
- 人蔘事業支援 : 4ha. 40百萬원 (全額融資)  
· '95 - '98 : 每年 1ha씩 造成



6. 流通加工 및 輸出支援 : 7個事業. 8,957百萬元

(國費 2,772. 道費 340. 郡費 340. 融資 2,990. 自負擔 2,515)

○ 農産物共販場 設置 : 1個所. 2,083百萬元 ('98施行)

(國費 833. 道費 208. 郡費 208. 融資 417. 自負擔 417)

○ 改良곳간 : 14個所, 7百萬元 (融資 5. 自負擔 2)

· '95 ~ '96 : 每年 7個所씩 投資

○ 農産物 規格出荷 : 23,470千枚. 1,320百萬元

(國費 264, 道費 132, 郡費 132, 自負擔 792)

· '94 : 1,750千枚 · '95 : 4,260千枚 · '96 : 5,020千枚 · '97 : 5,780千枚 · '98 : 6,660千枚

○ 産地系列別 加工事業 : 3個所. 2,820百萬元

(國費 1,410. 融資 846. 自負擔 564)

· '95 ~ '97 : 每年 1個所씩 投資

○ 傳統食品 開發事業 : 3個所, 538百萬元

(國費 265, 融資 162, 自負擔 111)

· '96 ~ '98 : 每年 1個所씩 投資

○ 農水産物 加工機械産業 : 8個所, 272百萬元 (融資 218, 自負擔 54)

· '95 ~ '98 : 每年 2個所씩 投資

○ 감자加工支援 : 1個所. 1,917百萬元 ('94投資)

(融資 1,342 自負擔 575)

7. 所得源 多樣化 및 生活環境 改善 : 10個事業. 18,412百萬元

(國費 6,620. 道費 802. 郡費 1,868. 融資 7,416. 自負擔 1,706)

○ 特産團地 造成事業 : 3個所, 213百萬元 ('94施行)

(融資 149, 自負擔 64)

- 農漁村休養資源 開發事業 : 21個所. 4,429百萬元  
(融資 3,127 自負擔 1,302)  
·'95 : 5個所 ·'96 : 11個所 ·'97 : 3個所 ·'98 : 2個所
- 민박마을조성 : 7個所, 446百萬元 (融資 312, 自負擔 134)  
·'96 : 2個所 ·'97 : 2個所 ·'98 : 3個所
- 觀光牧場造成 : 2個所, 686百萬元 (融資 480, 自負擔 206)  
·'97 ~ '98 : 每年 1個所씩 投資
- 集團마을造成 : 2個所. 4,334百萬元 ('94. '95 1個所씩)  
(國費 976. 道費 210. 郡費 208. 融資 2,940)
- 農路확장事業 : 37Km. 3,529百萬元 (國費 2,470. 郡費 1,059)  
·'95 : 7Km ·'96 : 10Km ·'97 : 7Km ·'98 : 13Km
- 정주생활권개발 : 1개소. 3,951백만원 (대화면)  
(국비 2,766. 도비 592. 군비 593)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195호, 408백만원 (읍자)  
·'94 : 60호 ·'95 ~ '97 : 매년 45호씩
- 농어촌가로등설치 : 62등, 16백만원 (국비 8. 군비 8) - '94추진사업
- 농어촌오폐수 처리지원 : 1개소, 400백만원 (국비) - '95추진

## II. 林業, 山村支援事業

1. 林業人力支援 —— 1개사업, 120백만원 (읍자)
  - 임업인력육성 (후계자) —— 5명, 120백만원 (읍자)  
·'95.'97. '98 : 매년 1명 ·'96 : 2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 4개사업. 21,515백만원  
(국비 8,654. 도비 2,242. 군비 5,513. 읍자 50. 자부담 5,056)

○ 조림사업 — 2, 130ha, 7, 463백만원  
(국비 2, 837. 도비 597. 군비 1, 342. 자부담 2, 687)  
·'94 : 575ha ·'95 : 386ha ·'96 : 385ha ·'97 : 396ha ·'98 : 388ha

○ 육림사업 — 13, 669ha. 7, 828백만원  
(국비 2, 740. 도비 783. 군비 1, 957. 자부담 2, 348)  
·'94 : 2, 489 ·'95 : 2, 558 ·'96 : 2, 985 ·'97 : 2, 796 ·'98 : 2, 841

○ 조림용묘목생산 — 535천본, 71백만원 (용자50, 자부담21) -'94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 : 21, 550ha. 6, 153백만원  
(국비 3, 077. 도비 862. 군비 2, 214)  
·'94 : 4, 990ha ·'95 : 4, 390 ·'96 : 4, 390 ·'97 : 3, 990 ·'98 : 3, 790

3. 林業基盤整備 및 機械擴充 — 3個事業. 18, 156百萬元  
(國費 : 7, 061. 道費 : 1, 889. 郡費 : 5, 172. 融資 : 246. 自負擔 : 1, 690)

○ 간벌사업 : 5, 500m<sup>2</sup>. 246백만원 (용자)  
·'94 : 640 ·'96 : 1, 200 ·'98 : 3, 660

○ 임도사업 : 202km. 16, 914백만원  
(국비 : 8, 460. 도비 : 1, 690. 군비 : 5, 074. 자부담 : 1, 690)

○ 사방사업 : 39ha, 996백만원  
(국비 699. 도비 199. 군비 98)  
·'94 : 8ha ·'95 : 5ha ·'96 : 7ha ·'97 : 11ha ·'98 : 8ha

4. 林產物流通 加工 및 技術開發: 2個事業. 1, 122百萬元  
(국비 : 514. 용자 : 492. 자부담 116)

○ 임산물 유통센터 : 1개소, 734백만원 (국비514, 용자220) -'95시행

○ 산림부산물저장시설:1개소, 388백만원 (용자272, 자부담116) -'97시행

5. 야생조수 보호사업 : 110백만원 (국비 55, 도비 24, 군비 31)

· '94 : 2백만원 · '95-'96 : 26백만원 · '97 : 30백만원 · '98 : 26백만원

6. 산지의 관광자원화 — 4개사업. 4,487백만원

(국비 1,384. 도비 395. 군비 395. 용자 1,756. 자부담 557)

○ 다목적 휴양림 조성 : 1개소. 1,486 - '96시행

(국비 1,046. 도비 223. 군비 223)

○ 조경수및분재생산 : 21개소. 1,500백만원 (용자 1,050. 자부담 450)

· '95. '96. '97 : 각7개소씩 시행

○ 단기소득 임산물 소득 : 2,230m<sup>2</sup>. 357백만원 (용자 250, 자부담 107)

· '95 : 890m<sup>2</sup> · '96 : 890m<sup>2</sup> · '97 : 450m<sup>2</sup>

○ 산촌정주기반사업 : 4개소. 1,144백만원

(국비 344. 도비 172. 군비 172. 용자 456)

· '97 ~ '98 : 매년 2개소씩 투자

7. 기타사업 — 1개사업, 5백만원 (국비 2, 자부담 3)

· 산불대책 : 54ha, 5백만원 (국비 2, 자부담 3) — '94시행

### III. 漁業, 漁村 支援事業

1. 기계화, 시설현대화 기술개발 — 1개사업, 164백만원

(국비 41, 도비 20, 군비 21, 용자 50, 자부담 32)

○ 증양식용 기계 : 120대, 164백만원

· '94 : 65대 · '95 : 13대 · '96 ~ '98 : 매년 14대

### IV. 其 他

1. 저장고 : 15동, 895백만원 (국비 268, 도비 134, 군비 134, 용자 359)

※ 시행년도 : 1995년도